

개정개요

※ 국세 반영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표준 차감 대상에
○ 직접투자 외국법인세액* 차감명세서 서식 규정 * 「법인세법」 제57조	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
	○ 감명세서 서식에 간접투자 외국 법인세액* 추가 * 「법인세법」 제57조의2

 개정 내용

-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(직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차감과 동일)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,
  -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세서 서식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(<sup>현행</sup>직접투자 → <sup>개정</sup>직접+간접투자)

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

■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